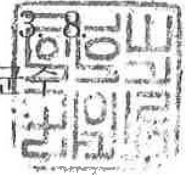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3. 8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‘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’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·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전 발생 시 위원회 구성·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5항)
- 나. 위원 임기 조항 삭제(안 제16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3. 2. 7. ~ 2. 27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·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 대한 의결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행위에 관한 특례) 이 조례의 시행 후 제15조제5항 개정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군수의 위촉행위는 종전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기가 존속 중인 위촉위원에 대한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행위를 한 때 그 위촉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구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신설></p> <p>제16조(위원의 임기 등)</p> <p>① <u>위촉직 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</u>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<u>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 2. <u>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3. <u>품위 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<u>그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	<p>제15조(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·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 대한 의결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

참고

상위 및 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